#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68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 김소희·박덕흠·김상훈

조경태 · 조지연 · 이헌승

우재준 • 김예지 • 장동혁

김위상 · 김형동 · 김선교

곽규택 · 엄태영 · 고동진

최보유 • 유용원 • 성일종

최수진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산불취약지역 지정)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취약지역에서의 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 취약지역에서의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산불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누구든지 산불취약지역에서 제17조의2에 따른 대피소,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벌칙) 제17조의3을 위반하여 산불취약지역에서 대피소,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 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17조 의2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산불취약지역 지정)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취약지역에서의 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에서의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 불예방・진화시설을 설치・관 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따른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산불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누구든지 산불취약지역에서 제17조의2에 따른 대피소,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산불예방・진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2(벌칙) 제17조의3을 위반하여 산불취약지역에서 대피소,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산불예방・진화시설을 훼손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